

— 구미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관계법령 개정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에 대한 추정 규정 등 현행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기 위하여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.

3. 주요내용

-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을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정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함(안 제2조, 제3조)
- 노인복지시설 대한 감면대상의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자를 노인복지 시설 운영자로 확대함(안 제6조)
-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경감방법을 과세표준액의 50%에서 각각 재산세의 100분의 50,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(안 제9조)
- 수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조문 정비(안 제12조)
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조문 정비(안 제16조)
-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에위한특별조치법의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17조)
-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법인 등이 지방으로 이전시 감면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2005.12.31까지 연장함(안 제25조)

4. 참고사항

- 조례개정 관련법 : 노인복지법, 수산물품질관리법,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,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
- 도 세정 13400-13066(2002.12. 7)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

5. 검토의견

- 경상북도 시·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 안임.
- 지방세법 관계법령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의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단서조항 삭제와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확대 및 수산물품질관리법,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,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조문정비 개정 조례 안임.
-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지방 이전시 감면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2002. 12. 31에서 2005.12.31까지 연장하는 조례 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음.